

의안번호	제 178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6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임헌경 의원 외 12인
발의연월일	2011년 6월 3일

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7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6월 3일

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

권기수·최병윤·김동환

김재중·이광진·이수완

임 현·김영주·김양희

박종성·유완백·정지숙의원

1. 제정이유

- 도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라 도서관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고,
- 소규모의 공간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2조)
- 작은도서관의 기능(안 제3조)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4조)
-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예산의 지원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협의함

다. 예산조치 : 해당부서 검토(별첨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2011.5.13~6.2(제시의견 없음)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에 따라 도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내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·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가목에서 정한 도서관 중 법 제31조에 의거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”란 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보존·축적·열람·대출
2.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
3.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·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4. 지역의 공공도서관,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
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
2.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3.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1.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
 2.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
 3.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·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예산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
 2.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-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발췌

□ 도서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"공공도서관"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·문화활동·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"공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 또는 법인(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단체 및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"사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.

가.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원의 조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27조(설치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"도서관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29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·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제32조(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4조(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, 시설,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「저작권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도서관법 시행령

제17조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독서문화진흥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